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8-119
변 호	

제출년월일 : 2018. 11.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 명칭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10. 11. ~ 10. 31.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3)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 11. 15.)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함”을 “성별영향평가함”으로,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한다.

제5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6조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

법」”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 한”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규칙심 의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8조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0조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을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12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부진하여위원”을 “부진하여 위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수당 과”를 “수당과”로 한다.

제18조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에관한사항”을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에 ----- ----- -----. 제2조(정의) ----- -----. 1. "<u>성별영향평가</u>"----- ----- ----- ----- <u>평가하</u> <u>여</u>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